



임업직불제 "한눈에 보기"



* '23.3월 기준

- ◆ 법적근거 :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정 '21.11.30, 시행 '22.10.1)
- ◆ 목 적 :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·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·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
- ◆ 적용대상(법 제5조)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임업인, 농업법인 및 등록된 산지
- ◆ 임업직불제 구성 및 시행

종 류	1 임산물생산업(1 소규모임가 · 2 면적직접지불금)		2 육림업
정 의	산지에서 대추, 호두, 밤 등 「임업진흥법」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등을 생산하는 임업		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
지급 대상산지	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'19.4.1.~'22.9.30.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		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'19.4.1.~'22.9.30.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로,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이상인 산지
지급 대상자	< 1 소규모임가, 2 면적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전 1년 이상(연간 90일 이상) 임산물생산업 종사 •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(농업법인 4,500만원) • 농촌(산지 소재 동일 시·군·구 또는 연접 시·군·구)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* 충족하는 자 * 주업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(농업법인 10ha) - 연간 임산물판매액 1,600만원 이상(농업법인 8,000만원) -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(농업법인 4,000만원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전 1년 이상(연간 90일 이상) 육림업 종사 • 농촌(산지 소재 동일 시·군·구 또는 연접 시·군·구)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업을 주업기준* 충족하는 자 * 주업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소지와 동일 시·도(주소지 시·군 연접 시·군 산지 포함)에서 30ha 이상 경영(농업법인 300ha) - 100ha 이상(주된 시·군과 연접 시·군의 산지 한정) 경영, 90일 이상 종사, 연간 목재 판매액 1,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(농업법인 해당 없음)
	< 1 소규모임가 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.5ha 이하 ② 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.55ha 미만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·농촌 거주 3년 이상 ④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⑤ 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,500만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,800만원 미만 * 어느 하나 미충족 시 면적직불금 신청 또는 지급		
지급면적	< 1 소규모임가 > 0.1ha이상~0.5ha이하		< 2 면적 > 3ha이상~30ha이하(농업법인 10ha이상~50ha이하)
	*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*중복지급 한도 : 면적직불금 30ha(임가당 60ha) + 육림업직불금 30ha(임가당60ha)까지		*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
지급단가 (ha당)	120만원 1 0.1ha이상~2ha이하 : 94만원 2 2ha초과~6ha이하 : 82만원 3 6ha초과 : 70만원		1 3ha이상~10ha이하 : 62만원 2 10ha초과~20ha이하 : 47만원 3 20ha초과 : 32만원
	* 지급단가 별도 고시하여 조정될 수 있음		

